

시멘트 · 건설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개정 고시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녹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6월 21일 관보에 고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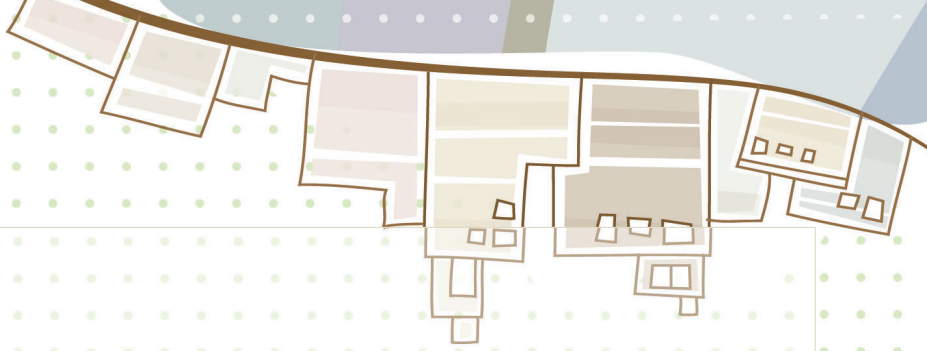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목표관리제와 관련해 업계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먼저 소량배출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 기준(15TJ→55TJ)과 소규모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10tCO₂-eq→100tCO₂-eq)이 완화되어, 해당하는 사업장 및 배출시설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배출량 산정 · 보고의 정확성은 유지하면서도, 명세서 등의 보고 항목이 조정되고 보고서식이 간소화되어 관리업체의 부담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명세서 제출 과정에 관리업체와 검증기관이 수정을 건의한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상 오류와 적용근란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배출량 산정방법인 굴뚝연속측정방법의 실측 도입을 위한 산정방법론을 마련하였는데, 해당 사항들은 내년에 제출하는 2012년도 명세서부터 적용된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인 제3자 검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으로 교육 및 평가 이수, 검증실적 등을 모두 갖추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검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증심사원보가 이미 검증실적을 쌓아온 전문분야의 검증심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검증심사원의 실적 확보기한(2년→3년)과 등록 특례기한 및 검증기관의 재지정 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였다.

현재 목표관리제에서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관리업체는 2014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목표관리제에서의 조기감축실적 분할 반영기한을 3년으로(당초 4년) 조정하였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말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의 정부구매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정부가 보상한 KCER에 대한 특례인정이 불필요해 짐에 따라, 2012년 이후 재정적으로 보상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에 의한 KCER은 조기감축실적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CDM 사업으로 등록된 배출시설은 사업유형, 적용범위 및 감축량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침상 2013년 목표설정 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된 벤치마크 할당방식 목표설정의 도입



시기는 할당계수의 개발 현황 및 업계 여건조성 등을 감안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환경부 이영석 온실가스관리팀장은 “환경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들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운영상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국토해양부는 2012년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개정에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반영하였다.

먼저 소규모공사에 품셈을 적용할 때, 현장의 작업여건 등에 맞게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실제 현장에서는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지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건에 따라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 현행 품셈에서는 할증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발주기관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다툼이 있어왔다. 따라서 금번 개정에서는 할증기준을 품셈의 본표에서 함께 기술함으로써, 이와 같은 분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사비를 삭감하여, 공사비가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있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품셈개정에는 해상작업 시 재료의 할증, 궤도공사 일부항목 등을 포함 총 74개 항목이 정비되었다. 본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사후평가 내실화, 부정부패 차단 등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시행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공사를 효율화하고 부정부패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202.1.17 공포)이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SOC 등 공공건설공사의 효율화를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턴키 등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이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와 관련된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척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사업 등을 직접 평가하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부정부패의 소지를 크게 줄였다.

이와 더불어 전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상 발주청과 신기술개발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발주청이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였다. 이밖에 수로기술자도 다른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당초 공사비 비율 또는 표준품셈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시설물의 표준품셈이 마련되지 않아 품셈방식 적용이 곤란함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일정 비율방식으로 단일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가 정착되고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와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어, 공공 SOC 건설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9일 입법예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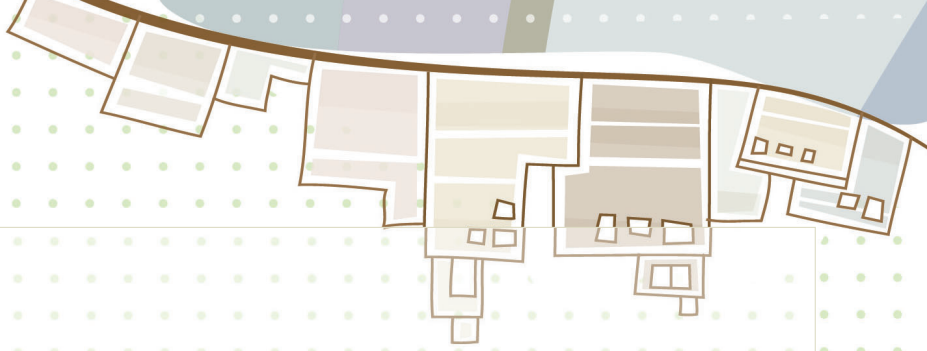
개정안은 먼저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민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30년 이상 된 도심 노후 주택지는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하고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아울러 효율적인 주택정비를 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법 개정(2012.1.26)으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허용함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건축심의의 통해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棟)간 띄우는 인동거리는 완화하되,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일조피해 방지를 위하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밖에 고층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감리를 할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건축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해양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안 마련,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30%까지 증가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2.1 공포)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선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이 마련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 디자인 및 도로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 설치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급되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도 면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지역을 규정하였다. 즉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구역의 경우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 증가범위를 완화하였다. 즉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동의요건도 완화해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또한, 1: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